

# 국가공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출제경향 분석

박병대 실장 국제원산지정보원 기획총괄팀

## 01 개요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주관하는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은 2010년 6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4과목(수출입통관실무, FTA 협정 및 법령, 품목분류실무, 원산지결정기준)에서 각 25문제씩(회차별 100문제, 총 1,300문제) 출제되었다.

원산지관리사 기본교재를 중심으로 각 과목별 출제경향을 분석, 제공하여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원산지관리사 시험과목 및 주요 평가내용

과목명	주요내용
수출입통관 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세의 개요</li> <li>관세법 일반</li> <li>통관</li> <li>수입통관절차</li> <li>수출통관절차</li> <li>보세구역관리</li> <li>보세화물관리 등</li> </ul>
FTA 협정 및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개요</li> <li>FTA 관세특례법</li> <li>원산지증명제도</li> <li>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li> <li>원산지 조사 및 사전심사</li> <li>비밀유지 의무</li> <li>불복신청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li> </ul>
품목분류 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S 품목분류 제도</li> <li>동·식물성 및 광물성 생산품</li> <li>석유화학공업제품</li> <li>섬유와 그 제품 및 신발류</li> <li>금속과 기계 및 기기</li> <li>수송기기 등</li> </ul>
원산지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산지결정기준 개요</li> <li>FTA 특혜관세 적용 전제조건</li> <li>원산지결정 일반기준</li> <li>원산지결정 품목별기준 등</li> </ul>

# 02

## 출제경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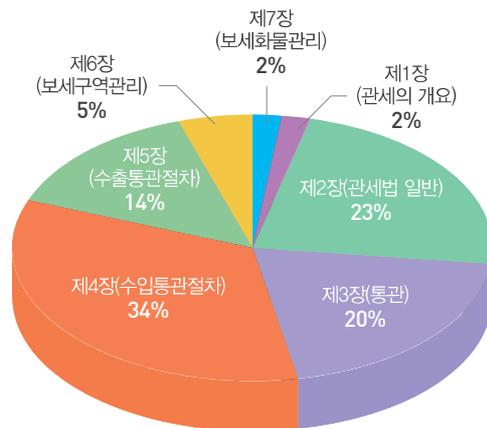
### 수출입통관 실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13회에 걸쳐 출제된 325문제의 유형을 살펴보면, “수입통관절차”에서 34.2%(111문제), “관세법일반” 부분에서 22.8%(74문제)가 출제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부분은 교재에서도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어 앞으로도 깊이 있는 학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통관”과 “수출통관절차”의 순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이 분야는 각종 FTA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취급되는 분야이므로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비중으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세구역관리”와 “보세화물관리”는 각각 5.2%와 2.5%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2013년도에 신규로 원산지 관리사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그 이전에는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종전보다 출제비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출제경향을 예상해보면, 특히 관세법일반 부분의 “과세 및 부과·징수”, 통관부분의 “통관요건”, 수입통관절차의 “수입신고”, 보세구역관리에서 “특허보세구역”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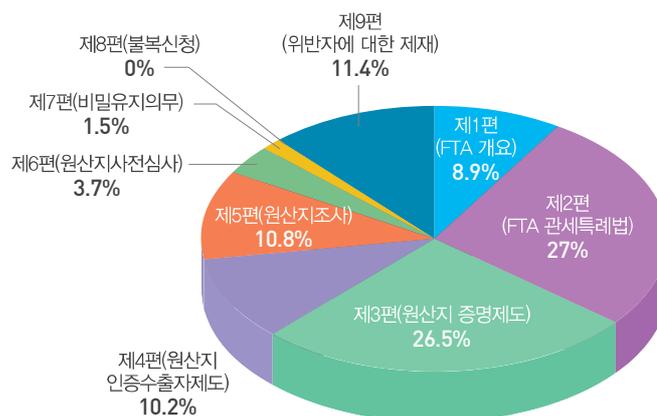
## FTA협정 및 법령

우리나라가 맺은 FTA 협정과 관련 국내 법령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FTA협정 및 법령은 총 325문제가 출제되었다. 출제경향을 보면 “FTA 관세특례법”에서 27.1%(88문제)가 출제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원산지 증명제도”가 26.5%(86문제)의 비중을 차지하였다.(부록 [표 11] 참조)

다음으로는 “위반자에 대한 제재”, “원산지 조사”, “인증수출자 제도”에서 각각 11.4%와 10.8% 및 10.2%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이 분야는 FTA 관세특례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중 FTA 활용을 위해 가장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내용들이므로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비율로 출제될 예정이다.

반면 “비밀유지 의무”와 “불복신청”은 각각 1.5%와 0.0%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원인은 “비밀유지 의무”의 경우 “위반자에 대한 제재”와 연계되어 있고 “불복신청”은 “원산지조사” 및 “원산지 사전심사”와 연계되어 있어 관련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FTA 협정 및 법령” 과목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FTA 관세특례법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면서 개별 협정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한 내용들을 서로 비교하여 이해하는 것이 기본적인 학습전략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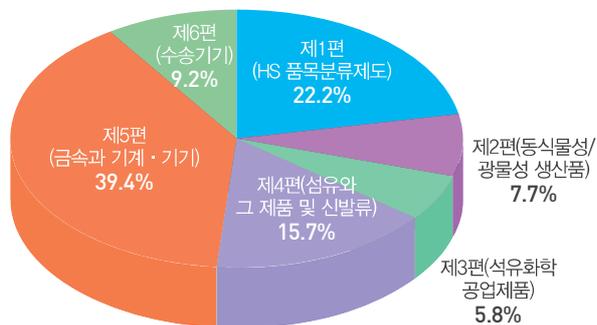
### 품목분류 실무

품목분류 실무는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의 4과목 중 수험생이 학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목이며 실제로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13회까지의 출제경향을 살펴보면 “금속과 기계·기기”부분에서 39.4%(128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 되었다. 다음으로 “HS 품목분류제도” 부분에서 22.2%(72문제), “섬유와 그 제품 및 신발류” 부분에서 15.7%(51문제), “수송기기” 부분에서 9.2%(30문제)가 각각 출제되었다.(부록 [표 22] 참조)

출제 빈도가 높은 품목은 우리나라의 수출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특징을 지니며, 또 FTA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취급되므로 앞으로도 유사한 경향이 지속될 예정이다.

다만 “동·식물성 및 광물성 생산품”과 “석유화학공업제품”은 각각 7.7%, 5.8%의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13년도부터 동·식물성 생산품(제1류부터 제24류까지)이 본격적으로 교육 과정에 추가되어 그 이전에는 1회와 3회시험에, 단 2문제만 출제 되었다. 그러나 제8회 시험부터 출제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출제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부록 [표 21] 참조)

이와 같이 출제경향으로부터 향후 수험생들은 특히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동·식물성 생산품과 연관산업 생산품”, “섬유와 섬유제품”, “자동차” 부분을 주의깊게 학습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 원산지결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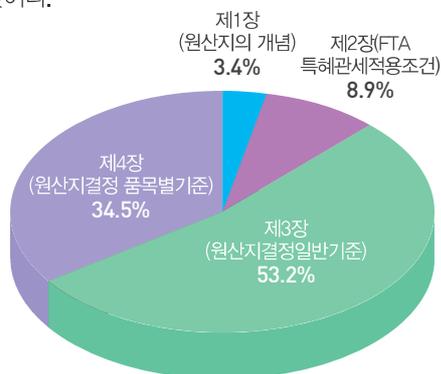
총 13회에 걸쳐 출제된 325문제 중 가장 많이 출제된 부분은 “원산지결정 일반기준(General Rule)”으로서 총 173문제가 출제되어 53.2%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부분의 세부항목별 출제 비율을 보면 “원산지 결정 특례(보충) 기준” 60.1%(104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완전생산기준” (15.6%), “역내생산기준”(8.7%), “충분가공원칙”(8.1%), “불완전생산품 (실질적변형기준)”(4.0%), “원산지재료 생산품 ”(3.5) 순으로 출제되었다.(부록 [표33] 참조)

“원산지결정 일반기준(General Rule)” 부분 외에 “원산지결정 품목별기준(Product Specific Rules)” 34.5%(112문제), “FTA특혜관세 적용조건” 8.9%(29문제), “원산지의 개념” 3.4%(11문제)가 출제되었다.(부록 [표 30] 참조)

“품목별기준(PSR)” 부분의 세부항목별 출제경향을 보면 “부가가치기준”에서 48.2%(50문제)로 매회 마다 3~5문제를 다루고 있어 부가가치 산출방식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세번변경기준” 37.5%(42문제), “가공공정기준” 14.3%(16문제)순으로 출제되었다.(부록 [표 34] 참조)

원산지결정기준 과목은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의 핵심적인 과목으로서 협정문에 등장하는 원산지결정기준 관련 용어와 다양한 기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요구되며,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원산지판정이 가능할 정도의 학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나와있는 각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부록 1 시험 과목별 출제 비중

1 수출입 통관실무 2 FTA 협정 및 법령 3 품목분류 실무 4 원산지결정기준

### 01 수출입 통관실무 출제 경향(표1~표9)

■ 표1 시험 회 별 출제문항 분석표 (원산지관리사 기본교재 기준)

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합계
제1장 관세의 개요	-	-	-	-	-	2	1	-	1	1	-	1	-	6
제2장 관세법 일반	4	5	-	5	7	5	9	4	5	4	10	7	9	74
제3장 통관	3	3	4	3	5	8	6	6	6	6	3	6	5	64
제4장 수입통관절차	11	13	17	12	10	6	6	9	6	7	6	3	5	111
제5장 수출통관절차	7	4	4	5	3	4	3	3	2	2	2	4	2	45
제6장 보세구역관리	-	-	-	-	-	-	-	2	4	3	3	3	2	17
제7장 보세화물관리	-	-	-	-	-	-	-	1	1	2	1	1	2	8
합계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325

■ 표2 분야별(편)별 출제문항 분석표

분야별 (편)	제1장 관세의 개요	제2장 관세법 일반	제3장 통관	제4장 수입 통관 절차	제5장 수출 통관 절차	제6장 보세 구역 관리	제7장 보세 화물 관리	합계
출제 문항수	6	74	64	111	45	17	8	325
비율(%)	1.8	22.8	19.7	34.2	13.8	5.2	2.5	100.0

■ 표3 제1장(관세의 개요) 출제비율

구분	제1장 관세의 개요	합계
출제 문항수	6	6
비율(%)	100.0	100.0

■ 표4 제2장(관세법 일반) 출제비율

구 분	제1절 통칙	제2절 기간과 기한	제3절 과세 및 부과·징수 등	제4절 납부의무의 소멸 등	합 계
출제 문항수	17	9	34	14	74
비율(%)	23.0	12.2	45.9	18.9	100.0

■ 표5 제3장(통관) 출제비율

구 분	제1절 통칙	제2절 통관요건	제3절 원산지확인	제4절 지식재산권 보호	제5절 통관의 예외	합 계
출제 문항수	1	29	11	13	10	64
비율(%)	1.6	45.3	17.2	20.3	15.6	100.0

■ 표6 제4장(수입통관절차) 출제비율

구 분	제1절 수입신고	제2절 가격신고	제3절 신고서의 처리방법 및 심사사항	제4절 세액의 결정방법	제5절 수입신고 수리	기 타	합 계
출제 문항수	47	18	5	34	3	4	111
비율(%)	42.4	16.2	4.5	30.6	2.7	3.6	100.0

■ 표7 제5장(수출통관절차) 출제비율

구 분	제1절 총칙	제2절 수출신고	제3절 물품의 검사	제4절 수출신고의 수리	제5절 수출신고 정정 / 취하 / 각하
출제 문항수	3	14	3	5	0
비율(%)	6.7	31.1	6.7	11.1	0.0
구 분	제6절 특수형태의 수출	제7절 반송통관	제8절 수출물품의 적재 이행관리	기 타	합 계
출제 문항수	10	3	3	4	45
비율(%)	22.2	6.7	6.7	8.9	100.0

■ 표8 제6장(보세구역관리) 출제비율

구분	제1절 보세구역제도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4절 보세공장	합계
출제 문항수	4	3	4	6	17
비율(%)	23.5	17.6	23.5	35.4	100.0

■ 표9 제7장(보세화물관리) 출제비율

구분	제1절 보세화물의 장치	제2절 물품의 반출입	제3절 보수·해체· 절단 작업 등	제4절 보세화물 폐기 등에 관한 관리	합계
출제 문항수	0	2	4	2	8
비율(%)	0	25.0	50.0	25.0	100.0

## 02 FTA 협정 및 법령(표10~표20)

■ 표10 FTA 협정 및 법령 시험 회 별 출제문항 분석표

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합계
제1편 FTA 개요	2	2	2	1	2	4	4	0	1	2	3	5	1	29
제2편 FTA 관세특례법	9	7	11	8	3	4	3	7	9	6	7	7	7	88
제3편 원산지증명제도	7	9	4	10	8	6	5	6	2	7	7	8	7	86
제4편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4	3	2	1	3	2	4	3	3	3	1	1	3	33
제5편 원산지 조사	0	1	3	2	4	3	3	4	4	2	4	1	4	35
제6편 원산지 사전심사	1	0	1	0	2	2	1	1	1	1	0	1	1	12
제7편 비밀유지 의무	1	0	0	1	0	1	1	0	0	0	0	0	1	5
제8편 불복신청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제9편 위반자에 대한 제재	1	3	2	2	3	3	4	4	5	4	3	2	1	37
합계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325



■ 표11 FTA 협정 및 법령 분야별(편)별 출제문항 분석표

분야별	제1편	제2편	제3편	제4편	제5편	제6편	제7편	제8편	제9편	합 계
(편)	FTA 개요	FTA 관세 특례법	원산지 증명 제도	원산지인증 수출자제도	원산지 조사	원산지 사전 심사	비밀 유지 의무	불복 신청	위반자에 대한 제재	-
출제 문항수	29	88	86	33	35	12	5	0	37	325
비율 (%)	8.9	27.1	26.5	10.2	10.8	3.7	1.5	0.0	11.4	100.0

■ 표12 제1편(FTA 개요) 출제비율

구 분	제1장 FTA란 무엇인가?	제2장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합 계
출제 문항수	9	20	29
비율 (%)	31.0	69.0	100.0

■ 표13 제2편(FTA 관세특례법) 출제비율

구 분	제1장 총론	제2장 협정관세	제3장 원산지결정기준	제4장 FTA 적용물품의 통관절차	합 계
출제 문항수	19	25	9	35	88
비율 (%)	21.6	28.4	10.2	39.8	100

■ 표14 제3편(원산지증명제도) 출제비율

구 분	제1장 원산지 증빙서류	제2장 원산지증명의 발급방식	제3장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제4장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소 계
출제 문항수	15	15	19	6	55
비율 (%)	17.4	17.4	22.2	7	64
구 분	제5장 원산지(포괄) 확인서	제6장 국내제조(포괄) 확인서	제7장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비교	제8장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 및 제출	합 계
출제 문항수	7	3	8	13	86
비율 (%)	8.1	3.5	9.3	15.1	100

■ 표15 제4편(원산지인증 수출자 제도) 출제비율

구분	제1장 개요	제2장 업체별 원산지인증 수출자	제3장 품목별 원산지인증 수출자	합계
출제 문항수	8	10	15	33
비율(%)	24.2	30.3	45.5	100

■ 표16 제5편(원산지조사) 출제비율

구분	제1장 개요	제2장 원산지 조사 기본원칙	제3장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제4장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합계
출제 문항수	2	3	25	5	35
비율(%)	5.7	8.6	71.4	14.3	100.0

■ 표17 제6편(원산지 사전심사) 출제비율

구분	제1장 사전심사 개요	제2장 원산지 사전심사의 절차	제3장 원산지 사전심사내용의 변경	합계
출제 문항수	3	7	2	12
비율(%)	25.0	58.3	16.7	100.0

■ 표18 제7편(비밀유지 의무) 출제비율

구분	제1장 비밀 유지의 의무	제2장 비밀취급 자료의 제공	제3장 비밀취급 자료 지정	제4장 비밀취급의 보관 및 폐기	합계
출제 문항수	0	2	3	0	5
비율(%)	0.0	40.0	60.0	0.0	100.0

■ 표19 제8편(불복신청) 출제비율

구분	제1장 불복신청의 개요 및 대상	합계
출제 문항수	0	0
비율(%)	0.0	0.0



■ 표20 제9편(위반자에 대한 제재) 출제비율

구분	제1장 협정관세 적용보류	제2장 협정관세 적용제한	제3장 벌칙	합계
출제 문항수	9	12	16	37
비율(%)	24.3	32.4	43.3	100.0

### 03 품목분류 실무(표21~표28)

■ 표21 품목분류 실무 회차별 출제문항 분석표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합계
제1편 HS 품목분류제도	15	6	3	6	5	5	4	3	4	5	5	5	6	72
제2편 동식물성/광물성 생산품	1	-	1	-	-	-	-	5	2	5	4	5	2	25
제3편 석유화학공업 제품	-	1	1	3	3	1	1	1	1	1	3	2	1	19
제4편 섬유와 그 제품 및 신발류	-	5	6	5	3	6	3	3	4	4	4	4	4	51
제5편 금속과 기계·기기	9	11	11	9	12	10	15	12	12	7	6	7	7	128
제6편 수송기기	-	2	3	2	2	3	2	1	2	3	3	2	5	30
합계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325

■ 표22 분야별 출제문항 분석표

분야별	제1편 HS 품목 분류제도	제2편 동식물성/광물성 생산품	제3편 석유화학 공업제품	제4편 섬유와 그 제품 및 신발류	제5편 금속과 기계·기기	제6편 수송기기	합계
출제 문항수	72	25	19	51	128	30	325
비율(%)	22.2	7.7	5.8	15.7	39.4	9.2	100.0

■ 표23 제1편(HS 품목분류 제도) 출제비율

구분	제1장 HS 국제통일 상품분류표	제2장 관세율표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3장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합계
출제 문항수	8	17	47	72
비율(%)	11.1	23.6	65.3	100.0

■ 표24 제2편(동·식물성 생산품 및 광물성 생산품) 출제비율

구분	제1장 동·식물성 생산품과 연관산업 생산품	제2장 광물성 생산품과 연관산업 생산품	합계
출제 문항수	22	3	25
비율(%)	88.0	12.0	100.0

■ 표25 제3편(석유화학공업제품) 출제비율

구분	제1장 석유화학공업과 연관공업생산품	제2장 플라스틱과 그 제품	제3장 고무와 그 제품	합계
출제 문항수	4	10	5	19
비율(%)	21.1	52.6	26.3	100.0

■ 표26 제4편(섬유와 그 제품 및 신발류) 출제비율

구분	제1장 섬유와 섬유제품	제2장 신발류	합계
출제 문항수	50	1	51
비율(%)	98.0	2.0	100.0

■ 표27 제5편(금속과 기계 및 기기) 출제비율

구분	제1장 금속과 금속제품	제2장 기계류의 공통 분류기준	제3장 기계	제4장 전기 및 전자기기	제5장 정밀기기	합계
출제 문항수	22	27	29	30	20	128
비율(%)	17.2	21.1	22.7	23.4	15.6	100.0

■ 표28 제6편(수송기기) 출제비율

구분	제1장 수송기기의 분류체계	제2장 자동차	합계
출제 문항수	9	21	30
비율(%)	30.0	70.0	100.0



**04 원산지결정기준(표29~표34)**

■ 표29 원산지결정기준 시험 회 별 출제문항 분석표

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합계
제1장 원산지의 개념	-	-	-	1	1	1	1	1	1	1	1	1	2	11
제2장 FTA 특혜관세 적용조건	2	1	2	2	5	4	1	2	3	2	3	2	0	29
제3장 원산지결정 일반기준 (General Rule)	14	16	17	12	10	13	13	14	13	15	11	13	12	173
제4장 원산지결정 품목별기준 (Product Specific Rules)	9	8	6	10	9	7	10	8	8	7	10	9	11	112
합 계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325

■ 표30 분야별(편)별 출제문항 분석표

분야별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합계
(편)	원산지의 개념	FTA특혜관세 적용조건	원산지결정 일반기준	원산지결정 품목별기준	-
출제 문항수	11	29	173	112	325
비율 (%)	3.4	8.9	53.2	34.5	100.0

■ 표31 제1장(원산지의 개요) 출제비율

구분	제1장 원산지 규정에 대한 설명	합계
출제 문항수	11	11
비율(%)	100.0	100.0

■ 표32 제2장(FTA 특혜관세 적용 조건) 출제비율

구분	1. 거래당사자 요건	2. 품목요건	3. 운송요건	4. 원산지 증명요건	합계
출제 문항수	8	2	12	7	29
비율(%)	27.6	6.9	41.4	24.1	100.0

■ 표33 제3장(원산지 결정기준 일반기준) 출제비율

구분	1. 완전 생산기준	2. 역내 생산기준	3. 총분 가공원칙	4. 불완전 생산품 (실질적 변형기준)	5. 원산지 재료생산품	6. 원산지 결정의 특례(보충)기준	합계
출제 문항수	27	15	14	7	6	104	173
비율(%)	15.6	8.7	8.1	4.0	3.5	60.1	100.0

■ 표34 제4장(원산지 결정기준 품목별 기준) 출제비율

구분	1. 세번변경 기준	2. 가공공정 기준	3. 부가가치기준	합계
출제 문항수	42	16	54	112
비율(%)	37.5	14.3	48.2	100.0

## 부록 2 원산지관리사 2015년 시행 일정

# 01 시행계획

### ● (2015년) 국가공인 원산지관리사 자격검정 시행 일정

회차	시행일자	시험공고일	원서접수기간	합격발표
14회	3. 28(토)	2. 23(월)	3. 2(월) ~ 3. 11(수)	4. 27(월)
15회	8. 22(토)	7. 20(월)	7. 27(월) ~ 8. 5(수)	9. 21(월)
16회	11. 21(토)	10. 19(월)	10. 26(월) ~ 11. 4(수)	12. 21(월)

※ 세부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시험의 시험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장소** : 시험공고 시 안내예정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검정기준** : 관련학과 졸업자, 관련업계 3년 이상 종사자가 관련

\* 관련지식(직무지식)

- 수출입통관 제도 전반을 이해할 것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을 파악하고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을 숙지할 것
- 품목분류의 개념을 이해하고 주요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를 할 수 있을 것
- FTA 원산지관리기준을 이해하고 각 제품에 대한 원산지판정을 할 수 있을 것

● **검정방법**

검정방법	시행형태			합격기준	
	구분	과목	문제수		
필기 (4지선다 객관식)	1교시 (60분)	• FTA협정및법령	25	총 50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품목분류실무	25		
	2교시 (60분)	• 원산지결정기준	25	총 50	
		• 수출입통관실무	25		

※ 자격의 유효기간 : 자격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3년 (보수교육 후 갱신)

● **검정과목**

과목	출제분야
① FTA협정및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50%;">• FTA 이해</li> <li style="width: 50%;">• FTA 관세특례법</li> <li style="width: 50%;">• 원산지증명 제도</li> <li style="width: 50%;">•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li> <li style="width: 50%;">• 원산지 조사</li> <li style="width: 50%;">• 원산지 사전심사</li> <li style="width: 50%;">• 비밀유지의무, 불복신청,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li> </ul>
② 품목분류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50%;">• HS 품목분류제도</li> <li style="width: 50%;">• 관세율표 통칙</li> <li style="width: 50%;">• 관세율표 각 부·류·주의 분류원칙과 품목분류* 등</li> <li style="width: 50%;">* 동식물성생산물 및 광물성생산물, 석유화학공업제품, 섬유와 그 제품 및 신발류, 금속과 기계 및 기기, 수송기기 등</li> </ul>
③ 원산지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50%;">• 원산지개요</li> <li style="width: 50%;">• FTA특혜관세적용조건</li> <li style="width: 50%;">• 일반기준</li> <li style="width: 50%;">• 품목별기준 등</li> </ul>
④ 수출입통관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50%;">• 관세의 개요</li> <li style="width: 50%;">• 관세법 일반</li> <li style="width: 50%;">• 수출입통관</li> <li style="width: 50%;">• 보세구역관리</li> <li style="width: 50%;">• 보세화물관리 등</li> </ul>

※ 시험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



## 02 응시방법

- **원서접수**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FTA원산지아카데미(<http://www.ftaedu.or.kr>) ➔ 자격시험 ➔ 시험접수 ➔ 공고명 클릭
- **응시료** : 50,000원
  - ※ (참고) 취소 · 환불 규정

구분	원서접수 마감 후		
	원서접수기간 중	시험시행일 7일전까지	시험시행일 6일전부터
환불적용률	100% 환불	부분환불*	환불불가

\* 부분환불금액 : 24,900원

- **문의처** : 국제원산지정보원 기획총괄팀 ☎ 031-600-0734~5

## 03 참고자료

- 「자격기본법」에 의거 민간자격으로 등록(2010.12.1.)되었으며 관세청으로부터 국가공인(2012.12.27.) 자격으로 승인
- (혜택) 관세청고시 제2013-76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원산지관리사 자격 소지자에 대한 원산지 증명능력에 대한 심사 생략 가능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심사)

제10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심사)

- ② 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지정요건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내부원산지관리전담자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춘 경우 원산지 증명능력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혜택)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 지원요건에 원산지관리사 포함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원산지관리사” 자격 취득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할 경우 최대 연 1,080만원 인건비 지원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고용센터 ([www.ei.go.kr](http://www.ei.go.kr))